

-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년 12월 5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2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12월 11일

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최 화 영

나. 제안이유

-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17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로 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거래품목(안 제3조)

- 청과부류 : 과실류, 채소류, 산나물류, 묵과류, 버섯류, 서류,
유지작물류,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.

○ 휴업일 및 영업시간 (안 제4조)

- 휴업일 : 명 절 - 신정, 설·추석 연휴
일요일 - 4월~10월 (첫째·셋째주 일요일)
11월~ 3월 (매주 일요일)
- 영업시간 : 15:00 ~ 익일 12:00

- 도매법인 수 (안 제6조) : 2개법인 (공판장 포함)
- 도매법인 지정 및 재지정 (안 제8조, 제9조)
 - 지정유효기간 : 3년이상 10년이하
- 도매법인 자본금 규모(안 제11조)
 - 청과부류 : 20억원 이상 (공판장 제외)
- 도매법인 보증금 납부 (안 제12조)
 -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20/100이상 (최저금액 5,000만원)
- 도매법인 운전자금확보 (안 제14조)
 - 전년도 연간 거래액 (연간 예상거래액) 15/1,000이상
- 경매사의 수 (안 제20조)
 - 법인별 최소경매사수는 2인으로 하고 품목별, 거래물량을 고려하여 추가 확보토록 함.
- 도매법인의 지정취소 (안 제22조)
 - 지정조건 및 명령·처분에 위반한때에는 시장은 법인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.
- 중도매인의 상한수 (안 제23조) : 120명 (과일류 : 87명, 채소 : 33명)
- 중도매업 허가 및 재허가 (안 제25조, 제26조)
 - 허가유효기간 : 3년이상 10년이하
- 월간 최저 거래금액 (안 제27조) : 청과부류 - 1천만원 (법인 1억원)
- 보증금 납부 (안 제28조) :
 - 경매 참여 도매법인에게 보증금 납부 또는 담보 제공
 - ※ 법인과 중도매인이 협의 후 보증금액 정함
- 매매참가인 관리 (안 제36조)
 -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
- 산지유통인 등록 (안 제37조)
 - 농산물의 거래질서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에게 등록제도를 둠.

-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(안 제48조)
 - 경매 또는 입찰방법은 전자식, 거수수지식, 기록식, 서면 입찰식으로 하고, 출하자가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음.
- 대금결제 및 지체상금 지급 (안 제54조, 제58조)
 - 도매법인이 수탁한 물품을 매매한 때에는 즉시 위탁자에게 매매대금을 결제토록 하였으며, 결제기한 경과시 지체상금을 지급토록 함.
 - ※ 지체상금 : 1일에 1000/1
- 시장사용료 (안 제62조)
 - 월간 거래금액의 5/1,000 (거래금액 비율 1/2, 사용시설 비율 1/2)
- 시설사용료 (안 제63조)
 -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물 재산가액의 50/1,000
 - ※ 중도매인점포는 10/1,000, 중도매인사무실·농산물품질관리실은 제외
-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(안 제64조) :
 - 위탁수수료 70/1,000, 중개수수료 40/1,000
- 시설의 용도지정 등 (안 제74조)
 - 도매법인, 중도매인 및 부속영업자가 사용할 시설의 위치, 면적, 사용기간 및 사용조건 등은 시장이 정함.
- 표준하역비의 부담 (안 제85조)
 - 도매시장의 하역체제의 개선과 하역기계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케 함. (2002. 1. 1 시행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윤 구

- 20001년 5월경 개정되는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전문98조의 이 제정 조례 안은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의 관계규정과 농림부의 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을 기초로 하고,

- 농산물도매시장을 우리시에 앞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인천·포항·안산시 등의 운영조례를 분석,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비교적 합리적인 조례라 사료됨.
- 다만 제정조례안중 조문표현 정확성의 결여로,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부 조항의 용어수정 및 중복된 문항의 삭제와 운영상 필요한 조문을 삽입하여 조례내용의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타당하겠으며,
 - 용어수정이 바람직한 조항
 - 제16조, 제30조 중 즉시를 → 7일이내 로
 - 문항삭제가 바람직한 조항
 - 제32조제2항 중도매법인이 대표자외의 자로 하여금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과 같다
 - 용어의 삽입 및 신설이 바람직한 조항
 - 제27조제2항 중 분기별을 → 매분기별 로
 - <별표6>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요령에 “제8조(수당과 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(위촉직위원)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” 를 신설
- 또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“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”를 개정, “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”를 설치하여,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업무를 전담토록 함이 바람직 하겠음.

4. 결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